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kr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문서번호 :	26-10-사무처-13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26. 10. 26.(월)
전송매수 :	총 17매

[공동 보도자료]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노동권·의료 공공성·주거권·정보인권 등 공익적 보호장치 훼손

소외·배제·박탈 아닌 포용·참여, 균분 가치 담은 지역균형발전 필요

일시 장소 : 2026. 10. 26. (월)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오늘(10/26)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인 초광역특구법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한상희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과 환경, 생명과 안전, 기업의 거버넌스와 균형발전, 주민참여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참여의 연대 체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등 시민들이 오랜 투쟁으로 쌓아온 공동체의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법안에 170여 차례 등장하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기존 법률에 담긴 공익적 원칙을 기업의 투자와 이윤을 위해 예외로 만드는 이 법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성장의 수단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국민주권정부라면 자본의 이윤보다 시민의 삶과

일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저항으로 출범한 정부가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면서 시민들의 저항이 이제 초광역특구법을 향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개발에 포용과 참여, 균분의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법안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고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초광역특구법의 연구개발 종사자 등에 대한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은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확대 특례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고용안정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는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규탄했다.

4.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온 노동규제 완화 과제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며, 특구에서 시작된 예외가 지역 간 노동조건 하향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 정작 합의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부터 발의한 데 대해 “한국노총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도장을 찍어주는 들러리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5.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는 초광역특구법이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SK하이닉스만을 위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의 최소한의 규제마저 SK하이닉스의 투자 필요에 맞춰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해 건설한 반도체 공장을 SK하이닉스에 빌려주는 방식까지 허용해 공적 기금이 과도한 투자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 변호사는 정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경제력 집중 규제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 기금에 과도한 위험까지 부담시키면서 SK하이닉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6.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초광역특구법이 기업을 위한 규제특례와 행정·재정 지원으로 가득 찬 ‘기업을 위한 종합 선물’이라며,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제주 싼얼병원과 녹지국제병원처럼 국내 의료자본이 외국인 명의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시도할 길을 다시 열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별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설치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 치료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과 지방의료원 지원,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업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단축과 재정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초광역특구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7.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는 초광역특구법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이용·제공 및 파기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충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범위한 규제특례 심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가 독립적인 기준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분산형 임상시험과 의료기기 실사용정보 활용에 따른 민감한 건강정보 보호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확대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통제권과 사전 감독, 피해구제 장치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변호사는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실효적인 감독체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이 법은 ‘초광역특구법’이 아니라 ‘하이닉스특별시법’, ‘재벌 무법지대법’이라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구실로 지역을 재벌대기업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넘겨주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특구법이 택지개발, 주택공급 등의 사업시행자를 민간사업자까지 확대해 SK에코플랜트나 삼성물산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에게 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일조권 보장을 위한 고도제한, 마감재 목록표 제공 등의 규제에도 예외를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수도권의 높은 자산가격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지역에 재투자하기는커녕 수도권 표심을 의식해 지역주민들에게 희생을 떠넘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9.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기업의 투자 편의를 위한 광범위한 규제완화와 특혜 제공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주도성장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3. 발언문 전문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노동권·공공성·경제민주화 원칙 허물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방치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과제다.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허물고, 의료와 주거의 공공성까지 훼손해야 할 이유는 없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 육성이 기존 법제와 시민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월 20일 발의한 약칭 초광역특구법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경제·의료·주거·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법안이다. 법안 스스로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유예',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내세우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기업에 어떤 규제를 더 풀어줄 수 있는지를 앞세운 것이다. 이렇듯 정부여당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밀어붙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두 가지 초광역특구법은 모두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기간제 사용기간에 관한 특례, 외국 설립 법인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특례 등 일부 조항을 덜어낸 법안도 발의되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 대상 업무·기간 확대 등 노동규제 완화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정 재벌의 투자구조에 맞춘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공적 기금 지원, 주택공급과 토지수용에 관한 특례, 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도 마찬가지다. 일부 특례를 조정했다고 해서 법안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 52시간상한제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만 덜어내면 나머지 특례는 그대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인가.

노동시간과 고용, 지주회사 규제, 의료기관 운영, 주택공급과 토지수용,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제도들은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를 특구라는 이유만으로 완화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두 법안은 기업의 추가적인 규제유예 신청과 특례의 확산까지 허용하여 특정 지역의 예외과 다른 지역과 산업으로 확대될 길을

열어두고 있다. 기업의 투자 편의를 위해 법률로 정한 원칙을 예외로 만들고 그 예외를 끝없이 늘려도 된다는 것인가.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기업 투자와 산업 육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 산업시설을 유치하고 기업에 각종 특혜를 제공한다고 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법안은 이러한 문제보다 규제를 풀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동일시하는 낡은 방식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요구를 받아 적은 규제완화 목록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의료, 공공서비스를 함께 발전시킬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경제민주화 원칙을 지키며, 의료·주거·환경의 공공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지 않는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이러한 원칙을 포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 위에서 실현해야 할 과제다.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인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권과 공공성, 시민의 기본권과 경제민주화 원칙이 지켜지는 실질적인 지방주도성장 방안을 제시하라!

2026년 10월 26일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붙임자료2.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무분별한 규제완화의 종합판, 초광역특구법 철회 촉구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10. 26. 월 10:30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프로그램
    - 모두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
    - 노동 분야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 경제 분야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보건의료 분야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정보인권 분야 :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주거부동산 분야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팀 부장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02-723-5052)

▣ 붙임자료3. 발언문 전문

1. **모두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명예교수**

우리는 초광역특구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 아니 그 속에 내포된 수많은 특례와 특혜와 특권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개발독재의 폭력에 맞서 싸우고, 정경유착의 횡포에 맞서 싸우며, 신자유주의의 음모에 맞서 싸우면서 힘들게 일구어 왔던 우리들 모두의 공동체가 이 법률에 의해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여의도에서,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그리고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힘들게 지키고자 하였던 우리들의 싦과 가치가 이 법률에 의해 다시금 시험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시민들의 저항은 단순히 무도한 정치권력에 대한 항거에만 환원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켜왔던 자유와 민주, 그리고 평등에 기반한 박애와 연대의 정신을 담아낸 항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항에 힘입어 출범한 이 정부가 집권 1년여만에 이렇듯 우리들의 일상을 짓밟으며 그동안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왔던 공동의 선과 지향들을 무위로 돌려버리려 애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일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본과 기업의 이윤에 그 모든 공익들을 희생시키려 노력하리라고는 일각의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어절이 170여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공공의 가치를 담은 법조항 170여 개가 이 “불구하고”에 의해 무위로 돌아갑니다. 노동과 환경, 생명과 안전, 기업의 거버넌스와 균형발전, 주민참여를 비롯한 민주주의와 참여의 연대 체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등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구성해왔던,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또 투쟁하여 만들어 왔던 그 소중한 가치들이 하나같이 백지 상태로, 우스갯거리로, 심지어 개발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담론을 부정하거나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민생은 성장이라는 자본의 탐욕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장애로 여겨져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민생은 성장과 발전의 목표여야 합니다. 지난 제헌헌법 당시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의 생활상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그 궁극의 지향으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가 우선이 아니라, 자본이 만능척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일상이 최우선적 가치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정부가 지향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검찰국가로 치달았던 지난 정부는 법률을 앞세워 자유와 민주주의를 피폐화하고 우리의 노동과 일상을 옥죄었습니다. 그들을 내란세력으로 구축하며 일어선 우리라면, 그리고 그 우리의 정부라면, 최소한 그들의 통치방식과는 다른, 우리를 위한 우리의 정부여야 합니다.

개발을 내세운 소외와 배제와 박탈의 정부가 아니라, 그 개발 속에 포용과 참여와 균분의 가치를 담아내는, 국민 모두의 정부여야 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은 그래서 반시대적이며 반민주적이며 반주권적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 법률을 통해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야 합니다. 그 속에 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담아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 비로소 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값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광역특구법 제정추진작업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에 맞섰던 그 “시민들의 저항”은 이제 초광역특구법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여의도에서 남태령, 한남동과 광화문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퍼졌던 그 시민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2. 노동 분야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부여당은 지난 10월 20일 초광역특구법, 이른바 메가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기업에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노동개악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환경파괴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까지 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역발전과 산업혁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 노동자의 희생과 시민의 권리 제한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법안은 연구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하며, 무기계약직 전환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노동자의 희생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여러 외투기업의 노동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외투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보상휴가제 적용을 제외하며,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기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산업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고용안정, 휴식권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입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조건의 후퇴와 환경파괴, 차별 없는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노동개악으로 가득한 조항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가 요청한 사회적 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해 놓고 정작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동개악 법안을 발의한 것은 대화를 명분으로 이용한것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는 대화와 합의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이중적 행태는 사회적 대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입법 추진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역발전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지역주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리며,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는 발전은 결코 진정한 지역발전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졸속 입법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3. 노동 분야 :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지난 10월 20일과 21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회적 반대에 부딪혀 온 규제 완화 과제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재벌 지배구조부터 의료·주거·환경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기준을 흔들고, 노동자의 권리마저 특례라는 이름으로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연장, 기간제 4년 연장, 외투기업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 파견대상 확대와 같은 전면적인 특례는 심각한 노동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노동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묻겠습니다.
국가 발전, 경제 발전, 지역 균형발전의 기준은 대체 무엇입니까?
더 오래 일하게 하고, 더 오래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면 국가가, 경제가, 지역이 발전됩니까?

노동자의 건강과 고용안정을 내주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 누구에게 좋은 발전입니까? 결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것 아닙니까?

노동권은 기업 유치를 위한 흥정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일하든, 노동자의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합니다. 한 지역에서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면 다른 지역에도 같은 예외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역마다 더 낮은 노동조건을 내세워 기업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구의 예외가 전국 노동자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본격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되지 않은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부터 내놓았습니다.대화하자고 불러놓고, 법안부터 밀어붙이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사회적 대화입니까? 일방적으로 법안을 제출해놓고 “처리시점을 못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저 정부와 여당의 말만 믿고 의제가 특정된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국노총은 이미 정해 놓은 결론에 도장을 찍어주는 들러리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참여를 법안 강행의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초광역특구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사회적 합의 없는 노동특례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확충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정부와 여당이 끝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한국노총은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맞서겠습니다. 현장과 지역의 힘을 모아, 노동권과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초광역특구법 철회하라!

4. 경제 분야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재벌 대기업집단은 총수로 불리는 지배주주가 그룹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분율 현황에 따르면,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내부지분율은 고작 3.5%에 불과합니다. 3.5%의 지분만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계열사간 지분 소유를 통한 피라미드식 출자구조,

중복상장, 순환출자, 비영리법인의 주식 소유로 총수일가를 정점으로 하는 소유지분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유지분구조가 가능하면, 재벌총수는 직접 투자 없이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해 얼마든지 계열사와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재벌 대기업의 후진적인 소유지분구조와 거버넌스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문어발식 확장,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K와 같은 지주회사는 적어도 손자회사 아래로 증손회사부터는 무분별한 확장을 할 수 없도록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정합니다. 공정거래법을 강화해서 총수일가로의 지배집중과 재벌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더 이상 확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어 왔으나, 문재인정부 시절 지주회사 행위 규제 등을 미세하게나마 손질한 후에는 제도적 개선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재벌 대기업집단은 피라미드식 출자구조, 중복상장 등을 통해 손쉽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그 피해와 위험은 고스란히 일반주주와 우리 경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를 받아 초광역특구에서 반도체업에 투자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증손회사를 50%만 소유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힙니다. 대기업집단에서 지주회사 체제에 있으면서 반도체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는 사실상 SK하이닉스 하나이고, SK하이닉스는 SK의 손자회사임. 법률에 SK하이닉스가 없다 뿐이지, 오직 SK하이닉스를 위한 특례입니다. 법률이 특정 대기업 1곳만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정 정책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일부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다면, 법과 제도는 규범력을 잃게 되고,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무너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도 문제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지은 뒤, SK하이닉스에게 리스료를 받고 빌려주는 형태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신설에는 막대한 자금 투여가 예상되므로, 기금이 부담하는 위험은 상당할 것입니다. 반면, 기금이 반도체 공장을 빌려주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리스료만으로 투자수익과 투자금을 회수해야 함.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고 볼 수 없는 방식입니다.

중요 산업을 지원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책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력집중 규제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기금이 과도한 위험까지 부담하면서까지 SK하이닉스만을 위해 특혜를 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초광역특구법을 전면 철회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해야 합니다.

5. 보건의료 분야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초광역특구법은 전체 264개 조항 중 156개 조항이 기업을 위한 "규제특례"를 담고 있고, 42개 조항은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온갖 방식의 규제특례가 담겼는데, 기존에 흔히 볼 수 있던 임시허가, 실증특례 외에도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특수 규제특례" 등, 이 정부가 기업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규제 특례 적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합니다. 우리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들이 모두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력화되게 돼 있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은 한마디로 기업을 위한 종합 선물입니다. 친기업 이재명 정부가 기업들의 이윤과 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영리병원 설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법안 61조는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를 담아,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제주 싼얼 병원이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같은 영리병원 설립 시도에서 봐 왔듯이, '외국인'은 얼마든지 국내 의료 자본과 손잡은 외국인이나 검은 머리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법안은 외국인이 설립하는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얼마든지 시행령을 통해 영리 법인이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영리병원은 시민의 저항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영리병원 외에도,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해, 그렇지 않아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가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을 비급여로 등쳐먹고 있는 판을 더 키우려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틀어막던 예비타당성 조사도 기업들을 위해서는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는 특혜를 부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백 조 원이 넘는 초과, 추가 세수에도 공공병원 설립, 지방의료원 지원, 법정 건강보험 국고지원에는 극히 소극적이면서, 기업주들을 위해서는 규제 철폐, 재정 지원 등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를 허물려는 초광역특구법안은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역대 우파 정부들도 하지 못했던 법이다. 이는 윤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기를 더욱 살려주는 짓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개혁 염원 대중의 기대를 저버린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반공공의료 폭주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초광역특구법을 즉시 폐기하라.

6. 정보인권 분야 : 최호웅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AI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지역별 산업거점 구축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최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법이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미 AI 개발을 위한 원본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였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를 위한 국가데이터기본법안, 의료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범위 조정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의된 피지컬 AI 개발 촉진 특별법안은 노동자의 작업경험과 숙련이라는 암묵지를 자유로이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책과 입법은 데이터 활용 확대에 비해 정보주체의 통제권과 사전 감독, 피해구제 장치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초광역특구법안을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144조는 자율주행 관련 특구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일정한 비식별 조치를 취하면 위치정보법 제19조와 제23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는 이동경로와 생활반경뿐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까지 추론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법안은 비식별 조치의 적정성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원본 정보를 언제 어떻게 파기할 것인지에 관한 충분한 통제장치 없이 이용·제공 및 파기에 관한 보호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범위한 규제특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심사체계가 미흡합니다.
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정보통신융합, 모빌리티, 스마트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확인, 실증특례와 규제유예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유예 심사기준에는 생명·건강·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여부는 독립적인 심사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업 진흥과 규제완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독립적인 감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감정보인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호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165조는 원격장비를 이용한 분산형 임상시험을 허용하고, 제167조는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안전성·유효성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정보의 처리 목적과 범위, 제3자 제공 및 재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한 드론 촬영과 자율운항선박 데이터 공유 등에서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영상정보와 위치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육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후퇴시키는 방식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AI 산업 육성 역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당 법안의 정보인권 침해 우려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특례사업에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실효적인 감독체계를 보장해야 합니다.

기존의 사회적 규범과 합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고, 실질적인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합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속도전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숙의와 합의에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입니다.

7. 주거부동산 분야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3대 메가특구법’, ‘초광역특구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하이닉스특별시법’, ‘재벌 무법지대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구실로 지역을 재벌 대기업의 식민지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넘겨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AI 업계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높은 연봉과 성과급만 보장해주면 52시간 넘는 노동을 시켜도 됩니까.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지역 원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재벌대기업 건설사에 넘겨줘도 됩니까. 특구 내의 노동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주면 그 주택 가격을 얼마로 하든, 마감재를 얼마로 하든, 닭장집이 되든말든 그냥 건설사들이 정한 금액과 재료로 마음대로 짓게 놔둬도 됩니까.

이 법대로라면 잘 풀리더라도 돈만 상대적으로 좀 더 받는다 뿐이지 3대 메가특구의 주민들은 일제시대 소작농들, 70년대 봉제공장 노동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결국 특구 주민들에게는 반도체 AI로 발생하는 수익의 콩고물을 일부 내려주고 더 큰 이익을 가져가는 건 재벌대기업과 총수일가입니다. 워낙 국민들의 삶이 어렵고 팍팍하니 너도나도 서로 반도체·AI 기업에서 일하겠다고 아우성인 것도 압니다. 아니 그렇다면 수도권과 지역의 일자리 지옥, 주거난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펴야지, 지역에다가 재벌들의 무법지대를 만들겠다는게 고작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까. 국민들이 그런 삶을 원한다고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재벌들의 무법지대를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부르짖던 기본사회가 이런 것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면서 숱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업들에게 갖은 특혜를 제공했지만 뚜렷한 성공사례는 없었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이 정도 특권을 준다면 최소한 특구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나 공기업, 공공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출연한 법인이 맡았지, 민간사업자에게 이렇게 포괄적인 법률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법은 아예 공공의 최소한의 역할과 감시마저도 포기한 법안입니다.

그렇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민간기업에게는 원주민들의 토지마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최소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지자체나 지역공사가 맡는다면 그 사업에는 대기업이나 그 계열사들이 들어올 수 없고 지역건설사들이 공사를 담당하게 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아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에게 공급할 주택을 SK에코플랜트나 삼성물산이 직접 짓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없고, 공공분양시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배제됩니다. 일조량 보장을 위한 고도 제한이나 마감재 목록표 제공 등의 규제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닭장집에 어떤 자재를 쓰든, 얼마에 분양을 하든 자유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는 이익은 모두 재벌 건설사들이 가져가고 지역건설사들은 불법 하청에 하청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애초에 건설경기 자체가 다 죽어가든 지역에 그런 하청의 하청 일이라도 어디냐. 지역도 동탄처럼 비싸고 높은 아파트에 살아보면 안되냐. 특구가 들어와서 유동인구가 늘면 인근 상권도 더 활발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실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아도 당연히 고민하고 추진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자산가격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그에 맞는 보유세를 부과하고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합니다. 그게 표 깎아먹을 것 같으니 재벌대기업의 콩고물을 받아먹는 쉬운 길을 가자,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이익도 볼테니 다소간의 희생은 감수하라. 이것 아닙니까. 정말 비겁한 정부, 무책임한 여당입니다.

특구법 제1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장과 그 부속시설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에서 민간사업자는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특구 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학교운영, 병원설립 등의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공공이 대부분을 출자한 법인 등 공공사업자가 해야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하이닉스특별시법’, ‘재벌 무법지대법’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